

소 장

원 고 : ○○광업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표이사 김 ○○

피 고1 : 오 ○○

2 : 윤 ○○

3 : 박 ○○

공작물 철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27. 지상에서 점유중인 “별지목록” 기재 공작물들을 각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을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충북 음성군 삼봉리 2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와 4필지를 2000. 2. 19. 소외 서○○으로부터 금104,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원고가 운영하는 태극광산의 과산현장 부지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들은 2001. 1. 11. 원고의 광산개발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박스 2개 및 비닐하우스 가설물, 이동식 야외화장실 2개를 각 설치해 놓고, 17개월 14일간 공사를 방해하므로써 원고는 부득이 2002. 5. 24. 오전 10시 무단공작물을 철거하였습니다.

3. 그후 피고들은 같은날 오후 3시 30분경. 꽃동네 차량으로 컨테이너 박스 1조와 간이화장실 1조를 싣고 강제로 공사장내에 불법으로 설치하려고 한바. 원고회사의 관리부장(임○○)이 육탄으로 약1시간동안 제지하였으나 피고들이 선동한 수녀 수십여명과 주민들 약 100여명이 집단무력으로 다시 설치하여 계속 광업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도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들 소유의 컨테이너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 무단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는 실정이고 피고들이 설치한 불법공작물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광산개발을 계속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즉각 철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본 소송에 이르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제 1호증 (원고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1. 갑제 2호증 (원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 1통 |

- | | |
|-----------------------------|----|
| 1. 갑제 3호증 1(원고 광업취득범위 사본) | 1부 |
| 1. 갑제 3호증 2(지적도 사본) | 1통 |
| 1. 갑제 3호증 3(피고불법 점유위치표기 사본) | 1통 |
| 1. 갑제 4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1통 |
| 1. 갑제 5호증 (결정문 사본) | 1부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갑제 1호증~제5호증 | 각 사본 |
| 2. 소장부분 | 3통 |

2002. 5. 27.

위 원고 : ○○광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김 ○○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귀 중

공작물의 표시

- | | |
|--------------|--------|
| 1. 콘테이너박스 | 1개 |
| 2. 이동식 야외화장실 | 1개. 끝. |

답 변 서

사 건 2002가단5050호 공작물 철거
원 고 ○○광업주식회사
피 고 오 ○○외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 아니므로 부인합니다.
2. 피고 오○○, 피고 윤○○, 피고 박○○은 컨테이너박스과 이동식 야외화장실을 음성군 금당읍 삼봉리 27 밭에 가져다 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고 오○○은 꽃동네 창설자 신부로서 꽃동네의 2곳(음성, 가평)에서 보살피 드리는 장애인, 폐질환자 등 4,000여명과 이분들을 보살피는 500여명 봉사자들을 관리하고 꽃동네의 정신적, 물질적 기초를 유지하는 업무에 관하여 통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업무는 각 책임을 담당하는 성직자들, 수도자들에게 위임하고 컨테이너박스나 비닐하우스나 화장실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모릅니다.

피고 윤○○는 꽃동네 총부부장으로서 꽃동네의 일반서무를 맡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과 비닐하우스, 화장실을 설치하는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 박○○은 3,000평 밭에 수박농사를 짓는 성실한 농민으로서 컨테이너박스과 비닐하우스 화장실을 설치한 일이 없습니다.

2002. 7.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손 광 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민사 2단독)

귀 중

소 장

원 고 ○○광업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표이사 김 ○○

피 고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59

이사장 장 ○○

- 공작물철거 등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을 순차로 연결한 605㎡중 피고들이 기거하고 있는 별지도면표시 20, 21, 22, 23, 20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표시부분 18㎡ 지상에 설치한 콘테이너 박스를 철거하고, 동 (가)표시 대지 18㎡를 인도하라.

나. 별지목록 기재 토지중 별지도면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1, 2, 3, 4, 5, 6, 7, 28을 순차 연결한 3762㎡중 별지도면표시 24, 25, 26, 27, 24를 순차 연결한 선내 (나)표시부분 1.5㎡ 지상에 설치한 화장실을 철거하고, 동(나)표시 대지 1.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충북 음성군 삼봉리 2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의 4필지를 2000. 2. 19. 소외 서호원으로부터 금104,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원고가 운영하는 태극광산의 광산현장 부지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2001. 1. 11. 원고의 광산개발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이 사건 토지위에 컨테이너박스 2개 및 비닐하우스 가설물, 이동식 야외화장실 2개를 불법으로 각 설치해 놓고 17개월 14일간 공사를 방해하므로서 원고는 부득이 2002. 5. 24. 오전 10시경 위 불법공작물을 철거하였습니다.
3. 그 후 피고는 같은날 오후 3시 30분경. 피고소유 차량 및 수십명의 수녀, 그리고 인근주민 약 1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컨테이너박스과 간이화장실 1개조를 다시 신고와 강제로 공사장내에 불법으로 설치하려고 한바, 원고회사의 관리부장인 소외 임○○이 맨몸으로 약 1시간동안 이를 저지하였으나 이들을 감당치 못함으로서 현재까지 불법공작물을 설치하여 놓고 원고의 광업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권원도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위에 피고소유의 컨테이너박스 등 불법공작물들을 설치하여 무단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고 피고가 설치한 불법공작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서는 광산개발을 계속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위에 설치한 불법공작물을 즉각 철거하고 동 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본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호제1호증	(원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1. 갑호제2호증의 1	(원고 광구현황도 사본)	1통
2	(원고 채광계획변경인가서)	1통
3	(원고 지적도 사본)	1통
1. 갑호제3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통
1. 갑호제4호증	(감정문 사본)	1통
1. 갑호제5호증	(감정서 사본)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분	1통

2002. 9. 2.

위 원고 ○○광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귀중

답 변 서

사 건 2002가단8097호 공작물철거 등
원 고 ○○광업 주식회사
피 고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청구권원(삼봉리 27번지)
 - (1) 원고가 청구를 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삼봉리 27번지의 토지 소유자는 소외당 서○○입니다.(을제 1호증의 1, 2 각 신, 구 토지대장) 다만 등기부상 복구만 안된 상태입니다.
 - (2) 서○○은 1967. 2. 25. 사망하여 처(윤○○)와 서○○등을 비롯한 6명의 자녀가 생존하고 있습니다.(을제 2호증의 1, 2 제적, 호적등본)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의 소유자는 서○○을 상속한 윤○○, 서○○등인 것입니다.

(3) 원고는 소외 서○○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서○○이 토지소유자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서○○은 서○○의 친척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4) 최근 서○○는 피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자가 서○○와 그의 가족임을 알리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을제 3호증의 1, 2 내용증명, 인증서)

(5) 따라서 원고의 청구권원 자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 사건 토지가 서호원 및 원고의 것이고 그에 기초하여 인도 및 철거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을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이 토지 부분과 관련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2. 화장실의 소유자(삼봉리 18번지)

(1) 피고가 설치한 바도 없고 피고의 것이 아닙니다.

(2) 이 사건 금광개발반대와 관련하여 음성군 맹동면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이 각각 회비를 내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피고는 맹동면 주민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3. 관련사건

(1) 원고는 이미 이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피고들만 달리하여 제기하여 진행중입니다. (2002가단 5050호 공작물 철거, 민사 2단독)

(2) 당사자를 확정하지도 않은 채 원고가 무책임하게 시위하는 형식의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철거청구와 관련이 있는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4. 결론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11. 26.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손 광 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 2단독)

귀 중

(2002가단8097호)

서 증 목 록

1.	을제 1호증의 1, 2	각 신, 구 토지대장
1.	을제 2호증의 1	제적 등본
1.	을제 2호증의 2	호적등본
1.	을제 3호증의 1	내용증명
1.	을제 3호증의 2	인증서